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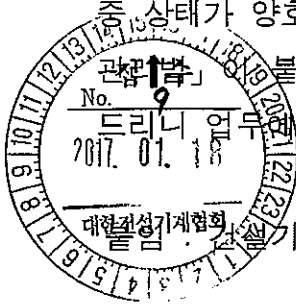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변경하고,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폐기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과 같이 '17.1.17(화) 개정공포되어, '18.1.18(목)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불임과 같이 '17.1.17(화) 개정공포되어, '18.1.18(목)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170117 관보 발체) 1부. 끝.

국토교통부



수신자 서울특별시(시설안전과장), 부산광역시(건설행정과장), 대구광역시(건설산업과장), 인천광역시(건설심사과장), 광주광역시(건설행정과장), 대전광역시(무송추진과장), 울산광역시(건설도로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통과장), 경기도지사(교통정책과장),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물류과장),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경상북도지사(도로철도공항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물류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귀하,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 귀하,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장 귀하,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장 귀하,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장 귀하,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귀하

사무관대우 심형석 공업사무관 차종선 과장 전결 2017. 1. 17. 이병훈

협조자

시행 건설인력기재과-202 (2017. 1. 1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45 팩스번호 044-201-5547 / shs10400@molit.go.kr / 대국민 공개

꿈꾸세요. 국민행복, 정부3.0이 함께 합니다.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 교 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

강 호 인

●법률 제145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을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이하 “폐기”라 한다)을”을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로 한다.

-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파쇄·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 ⑤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폐기업자”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제6조제1항제10호”를 “제6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중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를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